



제 1058 호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2- 1268호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공람 공고 2
- 공고 제2012- 127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5
- 공고 제2012- 1277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6
- 공고 제2012- 1285호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청 문실시)공시송달 공고 8
- 공고 제2012- 1288호 서창지구 체비지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 10

고 시

- 고시 제2012- 89호 도로명주소 고시 16
- 고시 제2012- 90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21
- 고시 제2012- 9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공시 송달 고시 26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268호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거 남동구 소재 인천광역시 시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2년 5월 18일 기 공고한 기준(안)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문화재위원의 현장조사를 종합 검토하여 재작성한 기준(안)을 고시 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2. 공고내용

가. 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심의과정에서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은 물론이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각각의 성격, 입지,

주변환경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 개발 및 건축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대상 문화재 및 해당지역(첨부파일 참고)

o 시지정문화재(1개소)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범위
기념물 제62호	월성박씨 종중묘역	남동구 서창동 산29-17	문화재구역 외곽 반경 500m

라. 열람장소

- o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o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
- o 인천광역시 남동구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 o 도면 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문화체육과),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바. 특기사항

- o 동 허용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08.28일까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제출 장소
 - (우)406-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문화재 담당자
- o 기타문의사항 : 남동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송지연 ☎ 032-453-2133)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전화번호 :
5. 의견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2-127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2. 8. 28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2. 8. 16 ~ 2012. 6. 27(12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남도-7	살싹웃음리	박인자	남촌동 346-15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09.7.31	2012.8.28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2. 8. 28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2

2012. 8. 1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송재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7길 8-8 (남가좌동, 지층 2호)	15허8524	간석동 홈플러스주차장 (2012.06.12. 22:40)	2012.07.31	2012.08.06	폐문부재
이상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7, 1114동 1001호 (논현동, 인천서창엘에이치11단지)	69허2631	서창2지구 LH11블럭 1114동 지하주차장 (2012.05.17. 08:31)	2012.07.31	2012.08.07	폐문부재
조혜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78, 2동 507호 (간석동, 극동아파트)	35노8742	서창2지구 LH11블럭 1110동 지하주차장 (2012.06.23.15:30)	2012.07.31	2012.08.06	폐문부재
박정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4, 105호(구월동,수정빌라)	50도5800	간석동 홈플러스주차장 (2012.06.28.20:15분경)	2012.07.31	2012.08.07	폐문부재
김태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2409동 906호(구월동,롯데캐슬골드)	25조2211	구월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2409동 지하1층주차장 (2012.07.01. 21:47)	2012.07.31	2012.08.08	폐문부재
박홍규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 34-67, 302호(송정동)	25너4496	간석동 홈플러스 주차장 (2012.06.28.20:15분경)	2012.07.31	2012.08.07	폐문부재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8. 14 ~ 2012. 08. 31(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8.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285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08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청문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2. 08. 17 ~ 2012. 09. 03.(17일간)
3. 처분의 원인 및 공시송달(사전통지)내역

송달 대상자	처분 원인사실	처분예정내용	청문일시	청문장소	비 고
(주)세종건설엔지니어링 대표 박종선	2012.1.18일[고잔동 296-8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포기 및 계약 불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5월이상 7월미만)	2012.09.05(수) 15:00	남동구청 (재무과)	폐문 부재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5. 기타사항

- 가.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 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2012년 09월 05일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지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5월이상 7월 미만)이 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재무과 계약담당(☎ 032-453-2264, FAX 032-453-2269, 전자우편 주소 snowq@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1288호

서창지구 체비지매각 일반경쟁입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를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하기 위하여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1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서창지구 체비지 매각
- 입찰에 부치는 토지 표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예정가격(원)	용도지역
1	서창지구 체 비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5-12	대	509.5	786,326,200	2종일반(단독주택)
2	서창지구 체 비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5-13	대	601.7	928,620,000	2종일반(단독주택)

- 공고기간 : 2012. 8. 17 ~ 2012. 8. 30
- 입찰기간 : 2012. 8. 31(금) 10:00 ~ 2012. 9. 6(목) 16:00
- 개찰일시 : 2012. 9. 7(금) 10: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 계약기간 : 개찰일부터 10일내
- 입찰서 제출 : 온비드(www.onbid.co.kr)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기간내 온비드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입찰 사용자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1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보며 입찰보증금을 공제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합니다.
-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180일 이내에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매각대금의 40%이상을 잔금납부 기간의 1/2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구금고 일반 연체이자율 16% ~ 17%)를 징수합니다.
- 잔금을 납부약정일부터 180일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서 매매계약 체결시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만 하고 매각대금 완납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매각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등) 및 매각 토지상의 지장물(지하매설물 포함), 토지활용제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 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에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 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8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8. 1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8의 8건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78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191의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9건)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별 도 열 램(1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8. 1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18	20091116	옛날에 은이 나왔던 마을이 있었다는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18번 기초구 간에 위치하여 18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4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245번길	2	20091116	문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로245번길2번 기초 구간에 위치하여 2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번길	17 (1동)	2009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 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5번길17번 기초구 간에 위치하여 17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번길	15 (2동)	2009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5번길15번 기초구 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78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5번길	11 (3동)	20091116	장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자로5번길11번 기 초구간에 위치하여 11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2-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367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367번 기 초구간에 위치하여 367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4번길	80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 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14번길8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0을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5-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2	20091116	앵고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0m지점 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941번길1 12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22를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1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72	20091116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8.17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비류대로762 번길172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72를 건물번호로 부여	직권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14, 37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372-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변경없음	2012.08.17	종전지번 직권 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19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2-5	2012.08.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9-14	2012.08.17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 2012-90호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하여 신설된 지적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8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세계측지계		지역좌표계		가리좌표계	
	X(m)	Y(m)	X(m)	Y(m)	X(m)	Y(m)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세계(중부), 지역(중부), 기타(가리)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2 택지개발사업지구					
설 치 일 자	2012년 6월 18일(지적삼각보조점) 2012년 7월 4일(지적도근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 설					

서창2지구 지적도근점

설치일자: 2012. 07. 04

점수: 102점

점명	세계측지계		지역좌표계		가리좌표계		비고
	X	Y	X	Y	X	Y	
3314	536775.001	176906.060	436469.09	176835.80	241.36	-11350.87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15	536722.182	176870.520	436416.27	176800.26	188.49	-11386.33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17	536524.751	176861.719	436218.84	176791.47	-8.95	-11394.83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35	536244.716	178636.296	435938.80	178566.04	-286.34	-9619.83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36	536372.787	178624.697	436066.87	178554.44	-158.28	-9631.62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38	536357.353	178942.368	436051.44	178872.11	-173.23	-9313.92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38	536357.353	178942.368	436051.44	178872.11	-173.23	-9313.92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45	536990.013	178537.296	436684.11	178467.05	458.81	-9719.94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3351	537042.619	177506.404	436736.71	177436.13	509.87	-10750.95	기준(세계측지좌표 포함)
4399	537043.946	177438.626	436738.04	177368.35	511.10	-10818.73	신설
4399	537043.946	177438.626	436738.04	177368.35	511.10	-10818.73	신설
4400	537035.693	177699.411	436729.79	177629.14	503.24	-10557.93	신설
4401	537012.920	178253.190	436707.02	178182.94	481.30	-10004.10	신설
4402	536997.561	178347.104	436691.66	178276.85	466.08	-9910.15	신설
4403	536995.221	178692.080	436689.32	178621.83	464.25	-9565.16	신설
4404	536812.346	178709.562	436506.44	178639.31	281.40	-9547.40	신설
4405	536626.714	178768.512	436320.80	178698.25	95.87	-9488.18	신설
4406	536576.550	178810.998	436270.64	178740.74	45.77	-9445.62	신설
4407	536472.269	178940.659	436166.36	178870.40	-58.32	-9315.80	신설
4408	536323.444	178830.849	436017.53	178760.59	-207.31	-9425.39	신설
4409	536356.580	178758.549	436050.66	178688.29	-174.28	-9497.74	신설
4410	536384.229	178722.753	436078.31	178652.49	-146.69	-9533.58	신설
4411	536310.190	178643.105	436004.27	178572.85	-220.85	-9613.12	신설
4412	536206.197	178613.897	435900.28	178543.64	-324.89	-9642.17	신설
4413	536126.143	178468.522	435820.23	178398.27	-405.15	-9787.43	신설
4414	536038.856	178373.673	435732.94	178303.42	-492.58	-9882.15	신설
4415	535984.974	178398.578	435679.06	178328.33	-546.43	-9857.16	신설
4416	535959.212	178310.143	435653.30	178239.89	-572.33	-9945.55	신설
4417	535949.068	178167.160	435643.16	178096.90	-582.69	-10088.53	신설
4418	535712.850	178240.726	435406.94	178170.46	-818.79	-10014.61	신설
4419	535569.387	178283.623	435263.47	178213.36	-962.18	-9971.50	신설
4420	535433.008	178323.674	435127.09	178253.41	-1098.49	-9931.24	신설
4421	535344.375	178206.875	435038.46	178136.62	-1187.30	-10047.90	신설
4422	535367.183	178123.226	435061.27	178052.97	-1164.62	-10131.58	신설
4423	535491.775	177902.312	435185.86	177832.05	-1040.36	-10352.68	신설
4424	535580.989	177745.228	435275.08	177674.96	-951.38	-10509.90	신설
4425	535659.256	177631.824	435353.35	177561.56	-873.28	-10623.42	신설
4426	535683.355	177566.036	435377.45	177495.77	-849.27	-10689.24	신설
4427	535738.686	177500.661	435432.78	177430.40	-794.04	-10754.70	신설

4428	535723.461	177350.238	435417.56	177279.98	-809.49	-10905.10	신설
4429	535735.877	177172.637	435429.97	177102.38	-797.34	-11082.72	신설
4430	535742.597	177066.697	435436.69	176996.44	-790.78	-11188.67	신설
4431	535759.015	176835.263	435453.11	176765.01	-774.70	-11420.13	신설
4432	536157.550	176973.914	435851.64	176903.66	-375.97	-11282.08	신설
4433	536242.194	176940.442	435936.28	176870.19	-291.38	-11315.68	신설
4434	536332.186	176900.489	436026.27	176830.24	-201.45	-11355.77	신설
4435	536474.777	176874.085	436168.87	176803.83	-58.90	-11382.39	신설
4436	536560.005	176833.033	436254.09	176762.78	26.26	-11423.57	신설
4437	536663.077	176847.576	436357.17	176777.32	129.35	-11409.18	신설
4438	536865.049	177010.442	436559.15	176940.18	331.56	-11246.63	신설
4439	536936.785	177073.322	436630.88	177003.06	403.39	-11183.86	신설
4440	536992.094	177130.057	436686.19	177059.79	458.78	-11127.21	신설
4441	536780.565	177737.409	436474.66	177667.14	248.17	-10519.54	신설
4442	536663.887	177651.509	436357.98	177581.24	131.37	-10605.26	신설
4443	536578.068	177686.556	436272.16	177616.29	45.60	-10570.08	신설
4444	536512.218	177681.833	436206.31	177611.57	-20.26	-10574.70	신설
4445	536334.392	177734.557	436028.49	177664.29	-198.00	-10521.71	신설
4446	536234.530	177813.357	435928.63	177743.09	-297.74	-10442.76	신설
4447	536162.973	177843.558	435857.07	177773.29	-369.25	-10412.45	신설
4448	536195.322	177951.257	435889.42	177880.98	-336.74	-10304.80	신설
4449	536263.958	178001.824	435958.06	177931.55	-268.03	-10254.34	신설
4450	536367.648	177994.700	436061.75	177924.43	-164.35	-10261.62	신설
4451	536459.394	177998.697	436153.50	177928.43	-72.60	-10257.76	신설
4452	536527.764	177972.965	436221.86	177902.70	-4.27	-10283.60	신설
4453	536626.516	177963.313	436320.62	177893.05	94.47	-10293.40	신설
4454	536702.581	177920.263	436396.68	177850.00	170.47	-10336.57	신설
4455	536760.160	177898.341	436454.26	177828.08	228.01	-10358.58	신설
4456	536776.257	177849.222	436470.35	177778.96	244.03	-10407.72	신설
4457	536800.064	177792.615	436494.16	177722.35	267.75	-10464.36	신설
4458	536100.925	178352.871	435795.01	178282.61	-430.54	-9903.04	신설
4459	536067.708	178267.539	435761.79	178197.28	-463.89	-9988.32	신설
4460	535993.895	178191.257	435687.98	178121.00	-537.82	-10064.49	신설
4461	535965.636	178102.320	435659.72	178032.06	-566.21	-10153.39	신설
4462	535888.911	177993.184	435583.00	177922.92	-643.09	-10262.41	신설
4463	536094.867	177910.548	435788.97	177840.28	-437.25	-10345.36	신설
4464	536040.968	177921.752	435735.07	177851.48	-491.13	-10334.08	신설
4465	536009.119	177956.329	435703.22	177886.06	-522.93	-10299.45	신설
4466	535853.276	177873.285	435547.37	177803.01	-678.90	-10382.26	신설
4467	535929.172	177841.592	435623.26	177771.32	-603.06	-10414.07	신설
4468	535950.510	177901.770	435644.60	177831.50	-581.63	-10353.92	신설
4469	536000.479	177814.838	435694.57	177744.56	-531.79	-10440.93	신설
4470	536016.969	177865.290	435711.06	177795.01	-515.22	-10390.50	신설
4471	536090.705	177824.456	435784.79	177754.18	-441.55	-10431.44	신설
4472	536066.580	177760.632	435760.67	177690.36	-465.77	-10495.23	신설
4473	536109.615	177757.518	435803.71	177687.25	-422.74	-10498.41	신설

4474	536113.672	177705.665	435807.77	177635.40	-418.76	-10550.27	신설
4475	536091.727	177639.519	435785.83	177569.26	-440.80	-10616.38	신설
4476	536103.578	177568.662	435797.68	177498.40	-429.05	-10687.25	신설
4477	536068.828	177484.513	435762.93	177414.25	-463.92	-10771.35	신설
4478	536003.605	177493.379	435697.70	177423.12	-529.14	-10762.39	신설
4479	535949.310	177546.901	435643.41	177476.64	-583.35	-10708.78	신설
4480	535838.613	177615.603	435532.71	177545.34	-693.95	-10639.91	신설
4481	535820.304	177544.884	435514.40	177474.62	-712.36	-10710.60	신설
4482	535849.231	178008.597	435543.32	177938.33	-682.75	-10246.94	신설
4483	535803.003	178046.719	435497.09	177976.45	-728.92	-10208.75	신설
4484	535713.991	178058.018	435408.08	177987.75	-817.91	-10197.32	신설
4485	535650.044	178092.027	435344.13	178021.76	-881.81	-10163.22	신설
4486	535598.263	178033.857	435292.35	177963.59	-933.68	-10221.31	신설
4487	535522.205	177964.865	435216.29	177894.60	-1009.84	-10290.19	신설
4488	535566.680	177887.589	435260.76	177817.32	-965.48	-10367.53	신설
4489	535610.200	177804.384	435304.28	177734.11	-922.09	-10450.79	신설
4490	535702.612	177780.921	435396.70	177710.65	-829.71	-10474.39	신설
4491	535795.057	177740.357	435489.15	177670.09	-737.32	-10515.09	신설
4492	535875.917	177741.072	435570.01	177670.81	-656.46	-10514.50	신설

서창2지구 보조삼각점

설치일자: 2012. 06. 18

점수 : 7점

점명	세계측지계		지역좌표계		가리좌표계		경위도(세계측지계)		경위도(지역좌표계)		표고(m)	비고
	X	Y	X	Y	X	Y	B	L	B	L		
남동보8	537043.006	177366.194	436737.10	177295.90	510.05	-10891.18	37°25'56.9923"	126°44'39.3555"	37°25'46.8436"	126°44'36.4203"	13.803	기원(세계측지좌표포함)
남동보53	537055.017	178008.034	436749.12	177937.78	523.04	-10249.30	37°25'57.4376"	126°45'5.4612"	37°25'47.2893"	126°45'2.5299"	21.293	신설
남동보54	536995.630	178649.764	436689.73	178579.51	464.60	-9607.48	37°25'55.5653"	126°45'31.5670"	37°25'45.4169"	126°45'28.6409"	10.213	신설
남동보55	536331.449	179137.381	436025.54	179067.13	-198.84	-9118.87	37°25'34.0618"	126°45'51.4714"	37°25'23.9110"	126°45'48.5442"	9.134	신설
남동보56	536218.850	178446.510	435912.94	178376.26	-312.47	-9809.57	37°25'30.3525"	126°45'23.3842"	37°25'20.2012"	126°45'20.4547"	9.532	신설
남동보57	535226.009	178339.228	434920.09	178268.97	-1305.47	-9915.37	37°24'58.1393"	126°45'19.1257"	37°24'47.9843"	126°45'16.1961"	13.491	신설
남동보58	535751.900	176924.696	435446.00	176854.44	-781.68	-11330.68	37°25'15.0744"	126°44'21.5426"	37°25'4.9211"	126°44'18.6079"	15.534	신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91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고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 영업시설물이 멸실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영업소폐쇄하고자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8. 1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물 멸실)사항 알림
2. 공고기간 : 2012.08.27. ~ 2012.09.10(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비고
식품제조 가공업	87	(주)아임바이오텍	박기춘 (58.07.03)	인천 계양구 작전동 901-1 상록빌딩 401호	영업 시설물 무단 멸실	
식품제조 가공업	19	최소이푸드	박명화 (79.01.10)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9-180, 102호	영업 시설물 무단 멸실	
식품제조 가공업	25	(주)아선	이동호 (65.12.01)	인천 남구 송의동 31-21	영업 시설물 무단 멸실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4항, 제75조
7. 기 타 :

(1)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인 남동구청을 경유,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처분기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032-453-27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